

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
(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)

[ ] 확정신고 [ ] 수정신고 [ ] 기한후신고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|        |   |
|--------|---|
| ① 접수번호 | - |
|--------|---|

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수증자   | ② 성명     | ③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전자우편주소 |
|       | ⑤ 주소     | (전화번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증여자   | ⑥ 법인명    |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| ⑧ 소재지    | (전화번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수혜법인  | ⑨ 법인명    | ⑩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| ⑪ 법인구분   | 1.상호[ ], 2.일반[ ], 3.중견[ ], 4.중소[ ] |          |
| 세무대리인 | ⑫ 성명(상호) | ⑬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| ⑭ 관리번호   | ⑮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⑯ 전화번호   |

| 증여재산가액 |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⑰ 증여일  | 구분 | ⑱ 세후영업이익 | ⑲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-5%(50%, 20%) | ⑳ 주식보유비율 -0%(10%, 5%) | ㉑ 배당소득 공제 | ㉒ 증여재산가액 |
|        | 직접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| 간접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
| 계      |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금액 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금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|
| ㉓ 증여세과세가액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| ㉔ 납부지연가산세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|
| ㉕ 과세표준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| ㉖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<br>(㉔-㉔+㉔+㉔) |           |    |
| ㉗ 세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| 납부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| 납부 및 신청일자 |    |
| ㉘ 산출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| ㉙ 연부연납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|
| ㉚ 신고세액공제<br>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9조) |  |    | 현금                          | ㉛ 분납      |    |
| ㉜ 신고불성실가산세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㉝ 신고납부    |    |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  
(서명 또는 인)

신고인

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 (전화번호 : )  
세무서장 귀하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제출서류        | 1.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<br>2.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<br>3. 과세제외 매출 등 그 밖의 입증서류<br>4.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<br>5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4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부문별 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수혜법인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사업부문별 재무제표 | 수수료 없음 |
|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| 1. 주민등록표등본<br>2.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## 작성방법

※ 이 서식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, 수증자별,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.

- "① 접수번호"란: 신고서 접수번호를 적는 난으로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
-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⑥부터 ⑧까지의 란: "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(Ⅰ)(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)"의 ②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"대표법인 외 ○"(으)로 적습니다.
- "⑨ 법인명"란: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.
- "⑩ 사업자등록번호"란: 수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- "⑪ 법인구분"란: 수혜법인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경우에는 "상호"에 ○(으)로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(이하 "중소기업")인 경우에는 "중소"에 ○(으)로, 수혜법인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(이하 "중견기업")인 경우에는 "중견"에 ○(으)로,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"일반"에 ○(으)로 표시합니다.
- "⑭ 관리번호"란: 「세무사법」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. 다만,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.
- "⑮ 생년월일"란: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(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)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.
- "⑰ 증여일"란: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.
- "⑱ 세후영업이익"란, "⑲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-5%(50%, 20%)"란, "⑳ 주식보유비율-0%(10%, 5%)"란, "㉑ 배당소득공제"란 및 "㉒ 증여재산가액"란: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"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(Ⅱ)(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)"의 ⑨란, ⑭란, ⑮란, ⑯란, ⑰란, ⑱란을 참고하여 직접보유분과 간접보유분(평균)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. 이 경우 "⑲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-5%(50%, 20%)"란은 2012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30%를 차감하며, 2013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%를 차감하되, 수혜법인이 중소·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%를 차감하며, 2017.1.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%를 차감하되,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%,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%를 차감하며, 2018.1.1.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5%를 차감하되,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%,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%를 차감합니다. 또한, "⑳ 주식보유비율-0%(10%, 5%)"란은 2012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3%를 적용하며, 2014.1.1.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3%를 차감하되, 수혜법인이 중소·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%를 차감하며, 2018.1.1.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%,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%를 차감합니다.
- "㉕ 세율"란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.

증여세 세율표

| 과세표준            | 세율  | 누진공제액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|
| 1억원 이하          | 10% | -        |
|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 | 20% | 1,000만원  |
|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| 30% | 6,000만원  |
|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| 40% | 16,000만원 |
| 30억원 초과         | 50% | 46,000만원 |

- "㉖ 산출세액"란: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  

$$[(\text{㉒ 과세표준} \times \text{㉕ 세율}) - \text{"5. 증여세 세율표"에 따른 누진공제액}]$$
-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"㉘ 신고불성실가산세"란에는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, 제47조의2, 제47조의3,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고, "㉙ 납부지연가산세"란에는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, 제47조의4, 제47조의5,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.
- "㉚ 분납"란: 납부할 금액(㉖-㉗)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  -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
  -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
- "㉛ 신고납부"란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.

##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(Ⅰ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### Ⅰ. 수증자 및 증여자

#### 가. 수혜법인

| ① 법인명 | ② 사업자등록번호 | ③ 소재지 | ④ 사업연도 | ⑤ 법인구분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
|  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|

#### 나. 수혜법인의 지배주주

| ㉠ 최대주주등 | ⑥ 주주명 | ⑦ 주민등록번호<br>(사업자등록번호) | ⑧ 관계 | ⑨ 지분율 | ⑩ 최대주주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|----|
|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|    |
|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|    |
|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|    |
|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|    |
|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|    |
|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|    |
|         | 계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|    |

| ㉡ 간접보유<br>비율<br>( ㉑이 법인인<br>경우) | ㉑ 간접출자법인 |  | ㉒ 수혜<br>법인 등<br>지분율 | ㉓ 주주명 | ㉔ 주민<br>등록번호 | ㉕ 지분율 | ㉖ 간접보유비율<br>( ㉒×㉕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인명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사업자<br><br>등록번호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
| ㉢ 지배주주 | ㉑ 최대주주등 중 직접・간접보유비율<br>이 가장 큰 개인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#### 다.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증자 요건 해당자

| ⑰ 주주명 | ⑱ 주민등록번호 | ⑲ 관계 | 직·간접 지분율    |             | ⑳ 지분율<br>합계 | ㉑ 수증자<br>해당 여부<br>(㉒>3%(10%)) |
|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|          |      | ㉒ 직접<br>지분율 | ㉓ 간접<br>지분율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| 지배주주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라.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 및 증여자 해당 여부

| ㉔ 법인명 | ㉕ 사업자<br>등록 번호 | ㉖ 유형 | ㉗ 수혜법인의<br>매출액<br>(라-1의 ㉘ 매<br>출액 소계) | 매출액 조정                   | ㉙ 특수관계<br>법인거래비율<br>(라-1의 ㉚) | ㉛ 과세요건<br>해당 여부<br>(㉜>30%(50%·40%·20%))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㉝ 제외매출액(라-1의 ㉞ 소계)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㉟ 과세제외매출액<br>(라-1의 ㊱ 소계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작성방법

- "㉔ 사업연도"란에는 수해법인의 사업연도를 적고, "㉕ 법인구분"란에는 수해법인의 법인구분(상호, 일반, 중견, 중소)을 적습니다.
- ㉖부터 ㉙까지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5조의3제3항의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해법인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인적사항과 관계, 지분율을 적습니다.
- "㉚ 최대주주"란에는 ㉙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큰 주주에 ○ 표시합니다.
- "㉛ 간접보유비율"은 ㉙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1) 법인주주(㉙)가 하나이면서 그 법인(㉙)의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을 적되, 2) 법인주주가 둘 이상이거나 그 법인(㉙)의 주주 중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"나-1. 수해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(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)"를 작성한 후 각 주주의 간접보유비율 합계를 적습니다.
- "㉜ 수해법인등 지분율"란은 "㉛ 간접출자법인"의 수해법인에 대한 지분율(㉙)을 적습니다.
- "㉝ 간접보유비율"란은 각 주주별 "㉜수해법인 등 지분율"×"㉛지분율"의 비율을 적습니다.
- ㉞부터 ㉟까지는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등 중 수해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지분율을 적습니다.
- "㊱ 지배주주"란은 (1) ㉟의 최대주주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성명을, (2) ㉟의 최대주주가 법인(㉙)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없고 그 법인주주(㉙)의 주주가 개인만 있는 경우는 ㉞의 간접보유비율과 ㉙지분율을 합하여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 주주[간접출자법인(㉙)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]의 성명을, (3) ㉟의 최대주주가 법인(㉙)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 주주가 있거나 그 법인주주(㉙)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"나-1. 수해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(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)"의 간접보유비율 합계와 ㉙지분율을 합하여 가장 큰 개인주주(각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)의 성명을 적습니다.
- ㊱부터 ㊳까지는 ㊱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되, 첫 번째 줄에는 지배주주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.
- "㊴ 직접지분율"란은 "㉙ 지분율"을 "㊱ 간접지분율"란은 "나-1. 수증자 간접보유비율(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및 간접보유 비율) (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)"의 "㉕ 간접보유비율"(수해법인의 법인주주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작성한 지분율의 합계를 말함)을 "㉚지분율 합계"란에는 직접지분율과 간접지분율의 합계를 적습니다.
- "㊵ 수증자 해당 여부"란은 ㉚의 지분율이 3%(수해법인이 중소·중견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%)를 초과하는 주주에 대하여 ○표시를 합니다.
- ㊶부터 ㊸까지는 "라-1.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(증여자 등) (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)"를 작성한 후 "㊶ 법인명"란과 "㊷ 사업자등록번호"란은 대표증여자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, ㊷부터 ㊸란은 해당 부표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.
- "㊹ 수해법인의 매출액"은 「법인세법」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적고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부문별 매출액을 적습니다.
  - 사업부문별로 자산·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경리할 것
  -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 이상으로 사업부문을 구분할 것
- "㊺ 과세요건 해당 여부"란은 "㊹ 2017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분부터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"이 30%(수해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%,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%, 2018. 1. 1.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수해법인이 중소·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"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이 1천억원\*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%)를 초과하는 경우 ○표시를 합니다.

\* 수해법인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4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: 1천억원 × (사업부문별 매출액 ÷ 전체 매출액)

## 나-1.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| ⑪ 간접출자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⑫ 수혜법인<br>지분율      | ⑬ 주주명    | ⑭ 주민등록번호<br>(사업자등록번호) | ⑮ 지분율     | ⑯<br>간접보유비율<br>(⑫×⑮)     |  |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|
| ①<br>수혜법인에<br>출자한 법인                     | 법인명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자등록<br>번호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사업자등록<br>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②<br>2차법인<br>[간접출자법인<br>(①)에 출자<br>한 법인] | ㉠ 출자법인      |  | ㉡<br>간접출자<br>법인지분율 | ㉢<br>주주명 | ㉣ 주민등록번호<br>(사업자등록번호) | ㉤ 지<br>분율 | ㉥<br>간접보유비율<br>(⑫×㉡×㉤)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인명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자등록<br>번호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인명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사업자등록<br>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③<br>3차법인<br>[2차법인<br>(②)에 출자<br>한 법인]   | ㉦ 출자법인      |  | ㉧<br>간접출자<br>법인지분율 | ㉨<br>주주명 | ㉩ 주민등록번호<br>(사업자등록번호) | ㉪ 지<br>분율 | ㉫<br>간접보유비율<br>(⑫×㉡×㉤×㉪)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인명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자등록<br>번호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인명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사업자등록<br>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
## 작성방법

※ "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(Ⅰ)(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)"의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(㉔)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있거나 그 법인주주(㉔)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.

1. ⑪부터 ⑮까지는 "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(Ⅰ)(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)"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(㉔)인 경우 그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, 주주명,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, 지분율 등을 적으며, 그 법인주주(㉔)외에 수혜법인에 출자한 다른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별지로 그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, 주주명, 주민등록번호 및 해당 주주들의 지분율을 적습니다.
2. "⑮ 간접보유비율"란은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 지분율(⑫)에 각 주주의 지분율(⑮)을 곱한 간접보유비율을 적습니다.
3. "㉑ 출자법인"란은 위 법인주주(㉔)의 주주가 법인(㉕)인 경우 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며, ㉒부터 ㉔까지는 그 법인(㉕)의 주주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와 모든 법인주주(㉔)에 대해 주주명,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, 지분율을 적습니다.
4. "㉓ 출자법인"란은 간접출자법인 ㉕의 주주 중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그 법인주주(㉔)의 주주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에 대해 주주명,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, 지분율을 적습니다.
5. "㉔ 간접보유비율"란은 간접출자법인(㉕)의 각 주주별 지분율에 ㉔법인에 대한 ㉕법인의 지분율(㉒)과 ㉔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(⑫)을 모두 곱한 지분율을 적습니다.
6. "㉕ 간접보유비율"란은 간접출자법인(㉔)의 각 주주별 지분율에 ㉕법인에 대한 ㉔법인의 지분율(㉑)과 ㉔법인에 대한 ㉕법인의 지분율(㉒) 및 ㉔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(⑫)을 모두 곱한 지분율을 적습니다.

## 다-1.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(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### 1. 수혜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의 주주현황

| ① 수혜법인의 법인주주 |  | ② 수혜법인 지분율 | 주주현황(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)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⑥ 간접보유비율<br>(②×⑤) |
|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| ③ 주주명              | ④ 주민등록번호<br>(사업자등록번호) | ⑤ 지분율 |                   |
| 법인명          |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사업자          |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등록번호         |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

### 2. 수혜법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주주현황

| ⑦ 2차 법인주주 |  | ⑧ 지분율 | 주주현황(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)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⑫ 간접보유비율<br>(②×⑧×⑪) |
|-----------|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|  |       | ⑨ 주주명              | ⑩ 주민등록번호<br>(사업자등록번호) | ⑪ 지분율 |                     |
| 법인명       |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사업자       |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등록번호      |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
| ⑬ 3차 법인주주 |  | ⑭ 지분율 | 주주현황(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)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⑮ 간접보유비율<br>(②×⑧×⑭×⑰) |
|-----------|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|  |       | ⑮ 주주명              | ⑯ 주민등록번호<br>(사업자등록번호) | ⑰ 지분율 |                       |
| 법인명       |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업자       |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등록번호      |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3.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혜법인의 법인<br>주주(①) | 2차 법인주주(⑦) | 3차 법인주주(⑬) | 4차 등 법인주주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⑲ 지배주주등이 30% 이상 출자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 ⑳ 지배주주등과 ⑲의 법인이 50% 이상 출자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 ㉑ 2차, 3차 등 법인이 위 ⑲ 또는 ㉒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이의 법인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 ㉒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
### 4.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의 간접보유비율 합계

| ㉓ 주주명 | ㉔ 관계 | ㉕ 간접보유비율<br>[간접출자법인(㉒) 해당 간접보유비율] | 비고 |
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      | 지배주주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
## 작성방법

※ "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(1)(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)"의 "㉔ 지분율"란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의 간접 지분율을 산정시 작성하며, 수해법인의 법인주주별로 각각 작성합니다.

1. "㉑ 수해법인의 법인주주"란과 "㉒ 수해법인 지분율"란은 수해법인의 법인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및 그 법인의 수해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적습니다.
2. ㉓과 ㉔에는 수해법인의 법인주주(㉑)의 주주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(㉑)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를 적으며, ㉕란은 법인주주(㉑)에 대한 해당 주주의 지분율을 적습니다.
3. "㉖ 간접보유비율"란은 ㉕지분율과 ㉒수해법인 지분율을 곱한 비율을 적습니다.
4. "㉗ 2차 법인주주"란은 "㉑ 수해법인의 법인주주"(㉑)의 주주(㉓)가 법인(㉑)인 경우에 그 법인명을 적으며, "㉘ 지분율"란은 그 법인(㉑)의 수해법인 법인주주(㉑)에 대한 지분율(㉕)을 적습니다.
5. ㉙부터 ㉛까지는 2차 법인주주(㉑)의 주주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(㉑)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, 지분율을 적습니다.
6. "㉜ 간접보유비율"란은 "㉛ 지분율"과 "㉘ 2차 법인주주의 지분율", "㉒ 수해법인 지분율"을 각각 곱한 비율을 적습니다.
7. "㉝ 3차 법인주주"란과 "㉞ 지분율"란은 ㉗ 2차 법인주주(㉑)의 주주(㉙)가 법인(㉑)인 경우 그 법인명과 그 법인의 지분율 (㉛)을 적습니다.
8. ㉟부터 ㊱번란은 3차 법인주주(㉑)의 주주 중 지배주주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, 지분율을 적습니다(4차, 5차 등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).
9. "3.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판단"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4조의3제16항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으로서, ㉙부터 ㊱까지는 해당 법인주주들이 다음 각 목의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○・×로 기재한 후, "㊲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"란에 그 결과를 ○표시 합니다.
  1.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
  2.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
  3.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해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

<사례>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해법인의 법인주주(㉑) | 2차 법인주주(㉗) | 3차 법인주주(㉝) | 4차 등 법인주주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㉙ 지배주주등이 30%이상 출자                       | ×             | ×          | ○          | ×         |
| ㉚ 지배주주등과 ㉙의 법인이 50% 이상 출자               | ×             | ×          | ×          | ×         |
| ㉛ 2차, 3차 등 법인이 위 ㉙, ㉚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이의 법인 | ○             | ○          | ×          | ×         |
| ㉜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| ○          | ○          |           |

10. "㉟ 주주명"란과 "㊱ 간접보유비율"란은 ㊲의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 각 법인주주(㉑, ㉗, ㉝ 등)의 주주 중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의 성명과 각각의 간접보유비율(㉕, ㉜, ㉞ 등)을 합하여 적습니다.

## 라-1.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(증여자 등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 앞쪽 )

1.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및 조정후 매출액

[illegible]

## 2.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등
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⑪ 대표 증여자 법인명<br>(특수관계법인) | ⑭ 대표증여자<br>사업자등록번호       |
| ⑫ 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           | ⑮ 과세매출비율                 |
| ⑬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<br>(과세요건)   | ⑯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<br>(증여의제이익) |

## 작성방법

※ 이 서식은 수해법인의 매출처 중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거래명세를 작성하는 서식입니다.

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을 모두 적으며, 특수관계법인과 매출액 중 "⑥ 과세제외 매출액"과 "⑦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"에 동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"⑦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"에는 그 동시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.

1. "① 법인명"란부터 "③ 특수관계유형"란까지는 "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(1)(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)" 나-㉔의 지배주주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2. "④ 매출액(①에 대한 수해법인의 매출액)"란에는 수해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매출한 금액을 적습니다.
3. "⑤ (부칙)제외매출액"란은 2014. 2. 21. 개정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부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정 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,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수해법인이 제품·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법인에 매출한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그 매출액을 적으며, "⑧ 사유"란은 "제품, 상품" 또는 "의무"로 적습니다. "⑨ 조정후 매출액"란은 "④ 매출액(①에 대한 수해법인의 매출액)"에서 "⑤ (부칙)제외 매출액"란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.
4. "⑥ 과세제외매출액"란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4조의3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"⑦ 추가 과세제외매출액"란은 같은 조 제1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매출액을 적으며, "⑧ 사유"란에는 같은 항 각호의 해당하는 호를 적습니다. 이 경우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에 해당하는 호를 적습니다.
5. "⑩ 소계"란에는 "④ 매출액(①에 대한 수해법인의 매출액)", "⑤ (부칙)제외 매출액", "⑥ 과세제외매출액", "⑦ 추가 과세제외매출액", "⑨ 조정후 매출액"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6. "⑪ 대표 증여자 법인명(특수관계법인)"란 및 "⑭ 대표증여자 사업자등록번호"란은 "⑨ 조정 후 매출액"이 가장 많은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  
("⑨조정 후 매출액(④-⑤-⑥-⑦)"이 있는 법인은 모두 증여자에 해당하나 편의상 대표증여자 1개 법인을 정한 것입니다)
7. "⑬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(과세요건)"란은 과세요건 충족 여부 확인시에 활용하는 것으로, "④ 매출액(①에 대한 수해법인의 매출액)"의 "⑩ 소계"에서 "⑥과세제외매출액"의 "⑩ 소계"를 차감한 금액을 ⑫ 수해법인의 총매출액에서 "⑥ 과세제외매출액"의 "⑩ 소계"를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.
8. "⑮ 과세매출비율"란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4조의3제10항의 세후 영업이익 산정시 활용되는 것으로,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정합니다. 즉, 수해법인의 "⑫ 수해법인의 총매출액"에서 "⑥ 과세제외매출액" 및 "⑦ 추가 과세제외매출액"의 "⑩ 소계"를 차감한 금액을 "⑫ 수해법인의 총매출액"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.
9. "⑯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(증여의제이익)"란은 수증자별 출자관계별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으로, "④ 매출액(①에 대한 수해법인의 매출액)"의 "⑩ 소계"에서 "⑤ (부칙)제외 매출액"과 "⑥ 과세제외매출액" ⑦ 추가 과세제외매출액"의 "⑩ 소계"를 차감한 금액을 ⑫ 수해법인의 총매출액에서 "⑥ 과세제외매출액" 금액"과 "⑦ 추가 과세제외매출액"의 "⑩ 소계"를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.

##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(Ⅱ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### Ⅱ. 증여세 과세가액

#### 가. 세후 영업이익

| ①<br>영업손익 | ②<br>세무조정 | ③<br>세무조정 후<br>영업손익<br>(①±②) | 법인세상당액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<br>산출세액 | ⑤<br>공제·감면세액                 | ⑥<br>차감후세액<br>(④-⑤) |
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+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-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⑦각 사업연도소득 |           | ⑧ 과세매출비율(라1.의 ⑮)             |           | ⑨ 세후 영업이익<br>[③-{⑥×(③/⑦)}]×⑧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
#### 나.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

| ⑩ 수혜법인<br>매출액<br>(라1.의 ⑫) | ⑪ 특수관계법인<br>매출액<br>(라1 ④의 ⑩소계) | 과세제외매출액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⑭ 특수관계법인<br>거래비율<br>(⑪-⑫-⑬)/(⑩-⑬) | ⑮ 초과비율<br>(⑭-5%) 또는 (⑭-50%) 또는 (⑭-20%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⑫ 제외매출액<br>(라1의 ⑤의 ⑩소계) | ⑬ 과세제외매출액<br>(라1.의 ⑥+⑦의 각 ⑩소계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다.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

| ⑯ 주주명<br>(수증자) | ⑰ 직접보유비율 | ⑱ 간접보유비율 | ⑲ 보유비율(0%, 10% 또는 5% 초과 보유비율)<br>[⑱ 에서 10%(5%) 우선 차감]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⑳ 직접보유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㉑ 간접보유비율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계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
#### 라.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㉒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<br>(⑨×⑮×㉑) |  |
| ㉓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<br>(⑨×⑮×㉑) |  |

#### 마. 배당소득의 공제

| ㉔ 수혜법인의 배당 시             |        | ㉕ 배당소득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㉖ 배당가능이익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㉗ 직접보유비율(17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㉘ 공제대상금액<br>㉕ × [( ㉒ / ( ㉕ × ㉗ ) ]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㉙ 간접<br>출자<br>법인의<br>배당시 | ㉚ 배당소득 | ㉛ 배당가능이익         | ㉜ 수혜법인의<br>배당가능이익( ㉖ ) |          | ㉝ 간접출자법인의<br>수혜법인에 대한<br>주식보유비율 |              | ㉞ 간접출자<br>법인에 대한<br>직접보유비율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㉟ 공제대상금액<br>( ㉚ × [ ㉜ / { ( ㉛ + ㉞ × ㉟ ) } × ㉜ ] 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㉞ 증여세 과세가액               |        | ㉟ 직접보유분( ㉒ - ㉓ )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㊱ 간접보유분( ㉓ - ㉜ )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㊱ 증여세 과세가액 합계( ㉟ + ㊱ )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작성방법

1. "① 영업손익"란은 「법인세법」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적습니다.
2. "② 세무조정"란은 "① 영업손익"에 다음 각 목의 세무조정사항을 적습니다.
 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「법인세법」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       | 나. 「법인세법」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    |
| 다. 「법인세법」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       | 라. 「법인세법」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|
| 마. 「법인세법」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    | 바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4조의2에 따른 퇴직보험료 |
| 사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74조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3. "④ 산출세액"란은 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적습니다.
4. "⑤ 공제·감면세액"란은 공제·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적습니다.
5. "⑦ 각 사업연도소득"란은 「법인세법」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.
6. "⑧ 과세매출비율"란은 "라-1.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(증여자 등)(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)" ⑮의 비율을 적습니다.
7. "⑨ 세후 영업이익"란은 "③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"에서, "⑥ 차감후세액"에 "③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"이 "⑦ 각 사업연도 소득"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후, "⑧ 과세매출비율"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.
8. "⑩ 수혜법인 매출액"란은 "라-1.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(증여자 등)서식(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)"의 ⑫를 적으며, ⑪, ⑫, ⑬은 "라-1.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 법인(증여자 등)(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)"의 ④, ⑤, (⑥+⑦)의 ⑩소계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9. "⑭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"란은, 각 수증자별로 "⑪ 특수관계법인 매출액"에서 과세제외매출액(⑫+⑬)을 차감한 금액을 "⑩ 수혜법인의 매출액"에서 과세제외매출액 중 "⑬의 해당 과세제외매출액"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.
10. "⑮ 초과비율"란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"⑭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"에서 50%를 차감하며, 중견기업은 2018.1.1.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20%(2017.1.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40%, 2017.1.1.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50%)를 차감하며, 그 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% 차감한 비율(2013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7.12.31.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15%)을 적습니다.
11. "⑯ 주주명"란은 "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(1)(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)"의 ⑰에 해당하는 수증자인 주주로서 신고하려는 주주의 성명을 적습니다.
12. "⑰ 간접보유비율"란은 "다-1. 수증자 간접보유비율(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와 간접보유비율)(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)"의 ⑮의 해당 주주 간접보유비율을 적으며, 간접출자관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.
13. "⑱ 보유비율(0%, 10% 또는 5% 초과 보유비율)"란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"⑳ 직접보유비율"과 "㉑ 간접보유비율"에서 10%를 차감하고,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%(2013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7.12.31.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10%)를 차감하며, 그 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비율(2017.12.31.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보유비율에서 3%를 차감)을 적습니다. 이때 "㉒ 직접보유비율"과 "⑳ 간접보유비율"에서 10% 또는 5%를 차감하는 순서는 1) 간접보유비율(간접보유비율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작은 비율부터 차감), 2) 직접보유비율 순서로 차감합니다.
14. "㉒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"란 및 "㉓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"란은 "⑨ 세후 영업이익"에 "⑮ 초과비율"과 "㉑ 간접보유비율" 및 "㉒ 간접보유비율"을 각각 곱하여 산정합니다.
15.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"㉒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" 및 "㉓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"에서 각각 공제하되,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(陰數)인 경우에는 영으로 봅니다.

$$\text{㉕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} \times \frac{\text{㉒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}}{\text{㉖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}} \times \text{㉗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}$$

$$\text{㉘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} \times \frac{\text{㉓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}}{[\text{㉙ 간접출자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} + (\text{㉚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} \times \text{㉛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})] \times \text{㉜ 지배주주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}}$$

※ "㉖ 배당가능이익", "㉚ 수혜법인의 배당가능이익"란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
※ 간접출자법인에 출자한 법인(2차 간접출자법인) 또는 2차 간접출자법인에 출자한 법인(3차 간접출자법인) 등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"㉙ 간접출자법인의 배당시"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별지로 작성합니다.